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기하고 서민 주거 생활안정

3. 주요내용

-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
 - 당 초 : 60㎡(전용면적)
 - 변 경 : 85㎡(전용면적)

4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시·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
- 구미시세감면조례

5. 검토의견

-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·월세 가격상승 억제를 하고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 방침으로 시·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타조례 및 법에 저촉사항은 없음.